# 12·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56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진성준·김문수·정일영

허 영·위성곤·김태년

임오경 • 박홍근 • 주철현

강선우 · 김성환 · 김주영

정태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 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 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음.

이와 관련하여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우울·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2·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12·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배상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12 · 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 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12·3비상계엄사태"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질서 유린 사태를 말한다.
  - 2. "피해자"란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3비상계엄사태에 관련된 피해 배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배상책임 등) ①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

- 한 군인·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기준은 12·3비상계엄사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금 외에 의료비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 ①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배상에 관한 사항
  - 2. 피해자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 3.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배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배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배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 3.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 4. 배상 및 보건 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사람
- ④ 배상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배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 2. 위원이 배상금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배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배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사실조사) ① 배상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배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배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3비상계엄사태 목격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배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견제출 등) ① 신청인은 배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배상위원회에 의료인이나 관련 전문가(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의료인등으로부터 의견을들을 수 있다.
- 제12조(지급결정) ① 배상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피해배상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피해배상 결정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배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소요된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실조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등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등 사 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배상금 등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배상금 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금 또는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배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2. 배상금 또는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9조(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결정, 배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 ② 배상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배상위원회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비밀준수 의무) 배상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배상위원회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관계자는 배상위원회등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배상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배상위원회 지원조직 지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